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및 제50조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삭 제>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완충저류시설

라.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포함)

마.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악취배출시설

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삭 제>

나.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는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마.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감독기관"이라 함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공환경시설별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나. 특별시, 광역시, 도

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삭 제>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6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라.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범위와 진단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대행기관에 기술진단 신청 후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제출)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11월 30일(완충저류시설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및 진단기관(직접 또는 대행)등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다음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해당연도 진단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2월 31일(완충저류시설은 매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① 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적용 대상시설은 제3조제4호다목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진단 신청서를 토대로 연간 기술진단 일정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진단의 시급성 및 진단대행기관의 적정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진단 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보고 후 기술진단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

는 기술진단 실시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진단대행기관의 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납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 기술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술진단 업무 실시절차 등 기술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진단결과 제출)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계획의 수립·보고) ① 관리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세부개선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개선 이행 및 확인·점검) ①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을 위하여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관리자 또는 감독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제4조관련)

번호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1	<삭 제>	<삭 제>	<삭 제>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5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 포함)	5년마다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4	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년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행규칙 별표6
5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6	완충저류시설	5년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비고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의 증설 또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기술진단을 받을 수 있다.
2. <삭 제>
3. <삭 제>

【별표 2】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제9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 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 전기·계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반복파형인 기본파의 정수배 주파수인 파동)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1-2. 폐수관로(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오·폐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오·폐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오·폐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 ^{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폐수관로 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 상세조사 구간 선정에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침수이력 등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 ^{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오·폐수 발생 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함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점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오·폐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오·폐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오·폐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TOC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한다.(내부조사 전 관로 준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현장 여건상 '관로 물돌리기'가 필요한 경우 물돌리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사업시행자에 보고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2. <삭 제>

3. 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악취발생 요소 및 민 원조사	현황 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 및 운 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개선 및 최적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4. <삭 제>

5. <삭 제>

6.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방 법
현황조사	반입폐기물의 특성조사	<p>(매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폐기물의 종류와 량 · 침출수의 성상변화 · 지하수·토양 등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 등에 대한 조사 <p>(소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대상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삼성분(수분, 회분, 가연분), 발열량 등 설계조건과 실제상황을 비교·분석 <p>(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공정 물질 수지 조사 · 악취, 폐수 등 제조 공정 외 부속공정 현황 조사
현상진단	시설진단	<p>(매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 및 옹벽의 안정성, 빗물 집·배수시설, 발생가스 포집,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과 기능유지 여부 조사 <p>(소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공급설비, 연소장치, 가스냉각설비, 배출가스처리설비, 통풍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과 적정기능유지 여부 조사 <p>(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시설(과쇄/선별/탈수 등) 및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필요한 시설, 악취저감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과 적정 기능 유지 여부 조사
	공정진단	<p>(매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반입관리, 복토등 매립작업, 차수시설 및 빗물배제 시설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검토 <p>(소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능력, 연소실 출구온도, 배출가스조사, 설계조건과 실제운영조건의 비교 및 현장운전방법의 적정성 검토 <p>(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공정, 제품제조공정(사료공정, 퇴비화공정등)의 관리 및 운영 적정성 검토
현상진단	<p>운영진단</p>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환경부고시 제2004-161호(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4의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

구 분	수행범위	방 법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 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 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7.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설치 운영계획, 배수계통 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일지 및 수질 분석 결과 등의 운전자료 검토, 설비의 유지관리 내용 파악
현상진단	시설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 및 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별 기계 및 배관설비 현황 파악 - 저류시설 유입 구조의 적정성, 펌프, 설비의 성능 파악 및 기능의 적정성 - 협잡물 제거시설, 세척 시설 등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 여부 조사 · 전기·계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 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주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 상태 점검 · 구조물의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상태, 균열, 파손 등 · 유입시설(차집관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 체계에 따른 차집의 적절성, 관로 불량 등으로 진단 - 수질 계측기와 수문, 밸브 등 차단시설의 연동운전의 적정성 - 차집부의 수질 계측 결과 조사
	운영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 시, 강우 시, 사고 발생 시 운영관리의 적정성 · 저류수 처리의 적정성 평가 ·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대책진단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 비용 산출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 시/강우 시/사고 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확인 및 보완 · 단위 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 방법 지도 · 시설 기자재의 관리 점검 등 운영관리 방법의 지도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제7조관련)						
①구 분 (가축분뇨 등)	②신청시설			③운영기관	④진단희망 시기	⑤비고
	시설명	규 모	최 초 가동일			
⑥합 계						

297mm×210mm

< 작성요령 >

1. ①구분 : 가축분뇨 등 시설별 분류로 작성한다.
2. ②신청시설 : 시설명, 규모 및 최초 가동일을 기재한다.
3. ③운영기관 : 기술진단 신청기관(지자체)을 기재한다.
4. ④진단희망시기 : 신청서상의 기술진단 희망시기를 기재한다.
5. ⑤기타사항을 기재한다.
6. ⑥합계 : 가축분뇨 등 시설별 신청시설의 총 개소수를 기재한다.